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0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이언주·송재봉·허성무

박민규 · 민병덕 · 소병훈

정진욱 · 김현정 · 박 정

조계원 • 안도걸 • 강준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 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 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제안보관리협의회) ①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경제안보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 2. 경제안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경제안보기술 등의 유출 금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

보를 국외 경쟁사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8조의2(경제안보관리협의회)
	①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
	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
	<u>다.</u>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
	<u>항을 협의·조정한다.</u>
	1. 경제안보 관련 국내외 정보
	의 공유 및 관리
	2. 경제안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제안보와 관련하
	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
	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로 정한다.</u>
<u><신 설></u>	제46조의2(경제안보기술 등의 유
	출 금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
	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를 국외 경쟁 사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